

# 예 산 총 칙

201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74,959,803	26,248,794
일반회계	703,856,498	21,115,695
특별회계	171,103,305	5,133,099
공기업특별회계	46,148,353	1,384,451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3,455,639	403,66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2,692,714	980,781
기타특별회계	124,954,952	3,748,64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269,370	428,081
주택사업특별회계	3,244,547	97,336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4,239,453	127,18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200,000	36,000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119,906	3,597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483,864	44,516
교통사업특별회계	6,267,344	188,02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79,689,788	2,390,694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4,440,680	433,22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62,46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5,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